

세종미래비전연구원 규정(4-2-9)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 및 소재지) 이 연구원은 건양대학교 세종미래비전연구원(이하 “본 연구원”이라 한다)라 칭하며, 건양대학교 내에 둔다.

제2조(목적) 본 연구원은 국가와 지역의 역사·문화·경제·교육 등 전 부문에 걸쳐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과제를 연구하여 그 해결방안을 탐구하고 제시하는 것은 물론, 다양한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를 선도할 리더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제3조(사업) 본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 한다.

- ① 공정한 국가와 사회 기반 구축 관련 사업
- ② 시대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응기반 조성 관련 사업
- ③ 우리 고유 역사와 문화의 계승·발전 관련 사업
- ④ 지방화시대, 지역인재 양성 관련 사업
- ⑤ 연구원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사업

제 2 장 조직 및 임원

제4조(조직) 본 연구원에는 연구부 그리고 기획부를 둔다.

제5조(임원 및 임기) ① 본 연구원에 원장 1인, 연구실장 1인, 기획실장 1인을 둘 수 있으며 고문 및 자문위원, 전문위원을 둘 수 있고 및 각 부에는 연구원 또는 위촉연구원을 둔다.

- ② 원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그 직무는 연구원을 대표하고,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③ 연구실장은 연구원의 연구기획 업무를 총괄한다
- ④ 기획실장은 대외협력과 홍보업무와 연구원 사업의 기획 및 재정관리 업무 연구행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- 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
제 3 장 연구원

제6조(연구원) ① 연구원에는 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, 위촉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- ② 연구원은 관련 전공의 박사과정 중이나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- ③ 연구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위촉연구원은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되,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④ 보조연구원은 연구원의 사업에 참여하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연구원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한다.

제 4 장 운영위원회

제7조(구성 및 회의) ① 본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 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본교 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본 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
-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 5 장 재 정

제9조(재정) 본 연구원의 재정은 학교 지원, 산업체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비, 사업수익금, 기타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.

제10조(회계년도) 본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제11조(운영세칙) 기타 본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13년 7월 25일부로 시행한다.